

1. 장애인등록

Q1

'19.7.1일 이전 1~6급의 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 기존 장애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행복e음에서 6.30일 일괄 변경됩니다.

Q2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심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 아니요,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Q4

'19.7.1일 이후 신규 장애등록 심사요청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니 심사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될까요?

➡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Q5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판정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장애등급은 Q1번 답변처럼 장애정도로 변경)

Q6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재판정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7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가요?

➔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는 없으나, 개별서비스 신청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역력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Q8

장애 4급을 가진 등록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의사소견은 없지만, 증중에 해당되는지 조정심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정도 조정은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장애상태 변화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9

'19.7.1일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7.1일 이후 심사결과가 나온다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 '19.7.1일 이후 통지되는 심사결과는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통보됩니다.

Q10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지 전 기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받는 건가요?

➔ '19.7.1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받으셔도 7.1일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Q1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 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최종 결정됩니다.

Q12

서비스 재판정 제도가 유지되나요? 폐지되나요?

➔ 활동지원서비스의 재판정 제도는 폐지되고, 그 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13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이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로 기재됩니다.

Q14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15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나요?

➔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1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사용하시고, 장애인연금법 등 타 법상 중증장애인을 정의한 경우 00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Q17

보행상 장애 및 장애인연금법상 의학적 기준 충족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가?

➔ 의학적 장애상태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종합조사 추진 로드맵에 따라 서비스기준이 개편될 때까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e음으로 제공되어 필요업무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Q18

보행상 장애와 같이 세부기준이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해당 기준이 고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는가?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맞춤형 상담 및 신청

Q1 맞춤형 상담이란 무엇인가?

- ➔ 담당자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하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자여부 등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용불가능한 서비스는 자동 제외하는 등 행복e음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장애등록(서비스) 담당자는 상담 전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 ➔ 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의 인적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장애관련사항, 현재 이용 서비스 및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 상담을 통해 주요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Q3 맞춤형 상담은 언제 진행해야 할까요?

- ➔ 장애등록이나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장애인이 읍면동에 내방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을 하고, 행복e음에서 제공되는 상담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상담결과가 반영된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가 민원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Q4 통합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 신청서식의 통합, 타기관 의뢰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이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5 서비스 통합신청은 대상자 본인 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 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별로 대리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타 기관 서비스 의뢰란 무엇인가요?

- ➔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로 연계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관련기관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뢰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Q7 전자적으로 의뢰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 ➔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은 고용 및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 장애인 취업상담·교육,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관련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Q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①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②사회활동(2개), ③가구환경(5개) 영역의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 ADL(일상생활 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전화사용, 물건 사기, 청소 등) / 인지행동특성: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등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 / 가구환경: 독거가구, 취약가구, 주거특성 등

Q3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누가하나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Q4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접수) 후 시군구에서 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시군구의 보장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종합조사 및 심의가 완료됩니다.

4.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Q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지원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 돌봄, 학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Q2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발굴유형을 가구특성*, 장애유형**, 수급탈락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구특성) 독거 또는 가족이 장애·아동·노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 가구로 가정내 돌봄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애유형) 장애특성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로의 접근성이 낮거나, 의료비 과다 지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수급탈락자) 수급기준을 초과하여 돌봄 등 특정 영역에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

Q3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기는?

➔ 보건복지부에서 발굴유형에 따라 대상자 추출 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대상자명단을 읍면동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도 자체 대상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4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초기 상담을 우선 진행(필요시 동행상담 지원)하여 단순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가구를 구분합니다. 사례관리 가구는 고난도 사례여부에 따라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Q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란 무엇인가요?

➔ 선정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 누락자 및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안내 또는 직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7 서비스 누락자 관리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조사가 필요없이 장애여부·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전기·난방 등 요금감면, 진단비(검사비)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 복지부가 주기적으로 신청 누락자를 확인하여 읍면동으로 명단을 제공하면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를 하게 됩니다.

Q8 수급탈락자 사후관리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점에 수급 희망 이력제 사전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급탈락이후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급가능한 대상자에 신청 안내 및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세부내용	대상급여(서비스)
수급기준(선정기준액) 변동		-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 - 종합조사: 1인(독거)가구 - 가구원수 감소로 인한 선정기준액 변동 * 1인:836,053원 2인:1,423,549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가구 환경	사망.세대 분리 등 가구원수 감소		장애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회 생활	취업/실직	- 종합조사: 직장생활 -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장애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Q9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관리기간은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수급탈락자에 대한 관리기관은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전신청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까지 관리됩니다.

Q10 동행상담이란 무엇인가요?

➡ 초기상담 시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Q11 동행상담 진행 시 동행상담기관은 어디인가요?

➡ 발달장애인의 경우 동행상담 의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우선 의뢰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복지기관으로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우선 의뢰합니다. 의사소통 관련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센터로 의뢰가능하며 지역 내 청각·언어복지관이 있는 경우 수화통역센터 대신 의뢰 가능합니다.

Q12 동행상담 방법은?

➡ 사전에 방문대상자-읍면동-동행기관 간 일정조율 후 읍면동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와 동행기관의 담당자가 2인 1조로 방문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Q13 각 기관별 동행상담 역할?

➡ 읍면동 공무원의 역할은 초기상담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초기상담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기관은 의사소통지원, 정보제공, 자원발굴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Q14 동행상담 의뢰 대상 기준은?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상담 의뢰 대상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 청각 혹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외 장애인
 - 독거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가구
 - 시·청각 중복 장애인
 - 보행상 어려움을 주는 내부기관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장애인
 -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관련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Q15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란 ?

➡ 읍면동에서 의뢰한 고난도 복합사례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장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장애특성을 반영한 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다각적 논의 및 슈퍼비전 제공을 지원하게 됩니다.

Q16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구성은?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보건·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시·군·구청장이 위촉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7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애인 의견의 최대한 반영되고,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의 위원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위원 위촉대상(예시)

- 시·군·구 장애인 복지 담당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팀장, 담당자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고용공단 팀장, 건강보험공단 부장
- 장애인복지관 관장(기관 사정에 따라 실무자 위촉 가능: 사무국장, 팀장), 민간 자원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 팀장
-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 기업의 사회공헌팀장
-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Q18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형태는?

- ➡ (설치형태)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3유형 중에서 택일하거나 변형해서 시·군·구청장이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 (1유형)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조직을 별도 신설(권고)
 - (2유형) 민관협의체 설치·운영이 용이하도록 기존 유사조직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 (3유형) 민간자원 접근성 및 통합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기존 통합사례관리 수행조직의 전문분과(희망복지지원단)로 설치·운영

Q19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초기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의뢰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장애정도,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나, 미충족 욕구가 있거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의 안건으로 보고,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Q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지표를 개선하였고, 활동지원등급을 4개 등급에서 1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개인별 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Q2

기존 인정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또는 가구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결정 됩니다.

Q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 기존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9.7월 이후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 읍면동에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추가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 (의료자료, 사회활동·가구특성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절차는?

- ➔ 읍면동에서 신청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후 시군구는 공단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의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며,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Q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조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 기본적으로 신청 후 조사·심의까지 3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수급자격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8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 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Q9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를 활용하여 산정된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Q10

개인이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개인의 생활환경(1인 독거가구, 직장생활 등) 등이 변화하는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은 몇 년 간 유효한가요?

➔ 수급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Q1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도 달라지나요?

➔ 아니요. 현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동일합니다.

Q13

가산수당 지원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산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14

종전에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수급자는 계속 가산수당을 지급 받나요?

➔ 가산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1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이용 방법도 달라지나요?

➔ 아니요. 현재와 동일하게 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6 추가급여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에 사회생활·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던 5개 추가급여(독거, 취약 가구, 직생생활 등)가 본 급여로 포함되고, 추가급여는 특별지원급여로서 3 가지 경우(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에만 지원됩니다. 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Q17 특별지원급여(중전 ‘추가급여’) 지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읍·면·동에서 신청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Q18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활동지원 등급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Q20 긴급활동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 긴급활동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고, 활동지원급여 13등급 수준인 120시간(1,556,000원)이 지급됩니다.

Q21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소득구간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되었던 본인부담금이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는 면제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인정조사 결과)는 경과 조치를 통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20.1.1일부터 변경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Q22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시·도 또는 시·군·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 시군구청장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안을 마련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거주시설

Q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Q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선정기준은?

-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거주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기능제한영역(X1) 24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기능제한영역(X1) 120점 이상이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Q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장소는?

-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Q4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 ➔ 읍·면·동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하며, 시군구에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본인 등 신청자 및 해당 시설장에게 안내합니다.

Q5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위한 대상자 조사 주체는?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거주시설 입소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이 가능합니다.

Q6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거주시설에 입소해있던 이용자는 제도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입소 가능합니다. 다만 퇴소 후 재입소시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장애인 보조기기

Q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Q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될 경우 지원합니다.

Q3 보조기기에 대한 종합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게 되나요?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보조기기 자격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 종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Q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순입니다.

Q6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일 경우 보조기기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교부제한도 폐지되나요?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규정은 유지됩니다.

Q7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현행 기준도 폐지되나요?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은 유지됩니다.

Q8

현행 기준에 의하면 보조기기 신청 시 지원 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사항에 있나요?

➔ 종전과 동일하며 변경사항 없습니다.

Q9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보조기기 신청 장소가 변경되나요?

➡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11 보조기기 센터에서 하는 적합성 평가는 없어나요?

➡ 보조기기 센터가 있을 경우 종전과 같이 적합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Q12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보조기기 신청 및 구입절차가 보완되어 간소화 되나요?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13 보조기기 신청 가능한 품목이 확대되나요?

➡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가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Q14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되나요?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품목 급여기준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7.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Q1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은?

➡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 장소는?

➡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3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다만, 순위 선정 부분에서 인정조사 결과로 산출된 활동지원등급(1등급)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활동지원등급(13등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4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절차는 바뀌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6

기존 인정조사로 결정된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이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기존 인정조사로 결정된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종전의 인정조사 점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